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2. 4 선고 2021가단1110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효성

담당변호사 최준호, 신제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냄

담당변호사 백갑선

변 론 종 결 2021. 12. 3.

판 결 선 고 2022. 2.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의 2021. 10. 13.자 청구원인 변경신청과 2021.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청 구 취 지

1. 소외 주식회사 C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1) 에 관하여 체결한 채권양도계약은 금 39,8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 39,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2021. 10. 13.자 청구원인변경 신청과 2021.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통하여 제1항 부분을 취하하고, 제2항의 청구원인을 채권자취소권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이러한 변경신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적법하여 허가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5. 18.경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임대목적물 "AL-FORM", 임대차기간 2020. 5. 1.부터 2020. 10. 31.까지, 차임총액은 74,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목적물의 공급을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대금 중 39,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은 2020. 12. 31.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차전1724 사건).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C는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합니다)과 2020. 4. 13.경 알폼 및 갱폼에 관한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알폼 및 갱폼을 모두 납품함으로써 D에 대하여 합계 114,282,830원3)의 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 2) 그런데 C가 D에 대한 대금채권 중 83,125,000원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 3) C는 무자력상태에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D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이러한 채권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4) 따라서 C의 채권 양도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39,8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05조, 제113조에 의하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등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는 2021. 2. 5.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21간회합100009 사건)을 받은 사실, ② 원고도 위 절차에서 법인회생채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C는 2021. 7. 8.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④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은 2021. 4. 16. 제기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C에 대한 법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법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2021. 10. 13.자 청구원인 변경신청과 2021.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

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원고는 당초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알품자재들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C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허용되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그런데 원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청구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지 아니한 것임은
물론 그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해당한다(원고 스스로도 2021. 10. 13.자
청구원인변경 신청서에서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고소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일을 추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21. 10. 13.자 청구원인 변경신청과 2021. 12.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정아

1) 소장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의 표시가 누락되었음

2) '피고는 원고에게'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임

3) 갱폼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32,184,240원(공급가액 29,258,400원 + 부가가치세 2,925,840) +
알폼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82,098,590원(공급가액 74,635,082원 + 부가가치세 7,463,508원)